

---

하수도시설물 손괴방지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이격거리 기준 마련  
자 문 의 견 조 치 계 획 보 고 서

---

2020. 10

(주) 한 국 종 합 기 술  
(주) 이 산  
(주) 도 화 엔 지 니 어 링  
(주) 제 일 엔 지 니 어 링 종 합 건 축 사 사 무 소  
(주) 동 해 종 합 기 술 공 사

## 자문의견 조치계획 보고서

□ 안건명 : 하수도시설물 손괴방지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이격거리 기준 마련

○ 위 원 : 조 임 남

구 분	검 토 내 용	조 치 계 획	비 고
	<p>- 각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하수시설물과 타 지하매설물간 적절한 이격거리 유지가 필요하나, 도심지의 경우 지하매설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격거리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바 하수시설물 이격거리에 탄력성 있는 기준 설정이 필요함.</p>	<p>- 현장여건에 따라 부득이하게 정해진 이격거리 확보가 어려운 경우,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탄력성 있게 적용 되도록 하겠습니다.</p>	
	<p>- 하수관로 손상으로 지하수 오염시 수돗물 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상수도 관로와의 이격거리 검토시 반영 필요.</p>	<p>- 금회 이격거리 표준(안) 중 상수도 관로와의 거리는 상수도 시설기준 및 표준시방서를 검토하여 이격거리 최대치를 반영함으로써, 하수관로 손상으로 인한 수돗물 오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.</p> <p>※ 수돗물 오염방지를 위한 하수관로 설치기준은 “하수도관 부설공 표준시방서”에 따라 상수도관 하위에 하수도관이 부설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금회 이격거리 기준에는 포함하지 않음</p>	

## 자문의견 조치계획 보고서

□ 안건명 : 서울특별시 204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

○ 위 원 : 김 경 진

구 분	검 토 내 용	조 치 계 획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토교통부의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있는 공동구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이나 고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필요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토교통부의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있는 공동구와 관련하여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, 고시를 확인한 결과, 관련 내용이 없으므로 금회 제정한 이격거리 표준(안)을 기준을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여 적정 이격거리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</li> </ul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하공간에 충분한 이격거리가 클수록 좋겠으나, 이는 관련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적정한 이격거리를 산정하고 추진하는게 바람직함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본 자문회의를 통해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금회 제시한 표준안이 최소기준으로 적합한 것으로 동의하였으므로 우선 적용토록 하고, 시범사업 시행시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여 조정안을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.</li> </ul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범공사를 하면서 실험을 통해서 적정한 이격거리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음.</li> <li>※ 다른 대도시 사례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범사업시 서울시내 하수관로 및 타 시설물 굴착공사시에 이격거리 표준(안) 적용이 가능한지, 이격거리는 적정한지 등을 검증하겠으며, 타 사례가 있을 경우 변경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.</li> </ul>	

## 자문의견 조치계획 보고서

□ 안건명 : 서울특별시 204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

○ 위 원 : 도 중 호

구 분	검 토 내 용	조 치 계 획	비 고
	- 지하매설물 매설 심도와 인접 구조물을 고려하여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.	- 이격거리 표준안은 타 지하시설물과의 거리만을 규정하고 있으나, 시범사업을 통해 매설심도를 감안할 필요성이 나타나는 경우 변경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.	
	- 하수관로의 경우 동결심도와 자연유하 구간의 경우 개보수 공사가 용이하도록 이격 거리를 유지하여야함.	- 현재의 이격거리 표준안은 유관기관의 공사표준시방서를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개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기준은 만족하고 있으며, 시범사업시 이격거리 확대가 필요한 경우 사례를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.	
	- 최근 기계 굴착과 인력 작업을 고려시 최소 이격 거리를 50cm이상으로 하고 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	- 본 자문회의를 통해 유관기관을 포함한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금회 제시한 표준안이 최소기준으로 적합한 것으로 동의하였으므로 우선적용하고, 시범사업 시행시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른 조정사항을 검토하여 기준안을 개선하겠습니다.	
	- 하수도 조례 및 설계지침 개정검토 요망	-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적 개선사항을 점검한 이후 지침 또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.	

## 자문의견 조치계획 보고서

□ 안건명 : 서울특별시 204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

○ 위 원 : 최 장 현

구 분	검 토 내 용	조 치 계 획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격거리 기준(안)은 우리공사 기준과 동일한 내용으로 현장에서 준수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관련기관의 지침과 기준을 감안하여 현장 적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격거리(안)를 설정하였으며, 추후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격거리 기준을 조정하겠습니다.</li> </ul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다만, 현장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, 부득이하게 준수가 곤란한 경우 관계기관 협의조치 할 수 있도록 규정 제정 필요함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하수관로 공사 현장 여건(도로폭, 지장물 유무, 인력굴착 등)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도록 반영하겠습니다.</li> </ul>	

## 자문의견 조치계획 보고서

□ 안건명 : 서울특별시 204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

○ 위 원 : 김 록 성

구 분	검 토 내 용	조 치 계 획	비 고
	- 중앙정부지침 개정 후 시설기준 등 기준마련 요망.	- 이격거리 표준(안)은 하수관로 및 타 지하시설물과의 간섭으로 인한 손괴방지가 목적으로 시급히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, 시범사업을 통해 적용성을 우선적으로 파악한후 지침 또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	
	- 이설기준보다 실제적인 횡단부설시 상호관로가 설치 및 유지보수가 할 수 있는 지침 마련이 중요함.	- 금회 제시한 이격거리 표준(안)은 유관기관의 공사표준시방서를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유지보수를 위한 최소기준은 만족하고 있으며, 시범사업시 이격거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례를 분석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.	
	- 현장관리인원 확충을 통한 하수관 파손방지 활동은 필요함.	- 시범사업시 현장 관리인원을 확충하여 관리·감독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.	

## 자문의견 조치계획 보고서

□ 안건명 : 서울특별시 204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

○ 위 원 : 권 재 철

구 분	검 토 내 용	조 치 계 획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하수시설물(관) 매설 시 지하공간의 여유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0.3m이상의 이격거리 기준 마련이 필요함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격거리 표준(안) 작성시 최소 이격거리를 0.3m 이상으로 하여 지하공간의 한계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.</li> </ul>	

## 자문의견 조치계획 보고서

□ 안건명 : 서울특별시 204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

○ 위 원 : 권 순 국

구 분	검 토 내 용	조 치 계 획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타 지자체 하수관 이격관련 기준 여부 확인 검토후 이격거리 산정 검토 필요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범사업을 통해 서울시에 적합한 이격거리 표준이 마련되도록 적정성을 검토하겠으며, 타 지자체의 사례가 있을 경우 표준안 확정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.</li> </ul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타 시설물 관련기관 지침 등 검토하여 현장적용 가능 이격거리 산정 검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금회 제시한 이격거리 표준(안)은 유관기관의 관리지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성한 것이며, 현장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현실적인 이격거리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.</li> </ul>	